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4-07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9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	2024노771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	A
항 소 인	피고인
검 사	정지선(기소), 주재현(공판)
원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. 24. 선고 2023고정491 판결
판 결 선 고	2025. 2. 7.

주 문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피고인은 'E'라는 D 채널(이하 '이 사건 채널'이라고 한다)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,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상(이하 '이 사건 영상'이라 한다)을 편집하거나 이 사건 채널에 업로드한 사실도 없다.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4-07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,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,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,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,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,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 판단

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, 원심은 판결문 중 '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'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.

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'본인이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영상도 직접 편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업로드하였다.'고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, 이 사건 채널의 개설 시기,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의 규모, 이후 이 사건 채널의 처분 내역 등에 대하여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4-07

구체적으로 진술한 점, ②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2023. 6. 27.자 정식재판청구 이유서에는 '영화의 일부를 인용하여 본인이 작성한 스크립트와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한 내레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다.'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, ③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'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자신이 이 사건 채널에 이 사건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않았다.'고 진술하였다가(원심 제1회 공판조서 참조), 2023. 11. 9.자 변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'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,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.'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, ④ 피고인은 '이 사건 채널을 인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채널을 개설, 운영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채널의 댓글을 관리하는 권한만을 부여받은 상태였는데,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연락을 받게 되자 어차피 이 사건 채널을 인수할 생각이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채널을 인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.'고 주장하나,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 사건 채널의 실제 운영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위와 같은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점, 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, 그에 관한 고소인 측의 경찰 진술, 이 사건 영상에 관한 캡쳐 사진 등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다.[1]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1)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, 이 사건 영상은 영화 'G'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캡쳐하여 제작된 것으로 영화의 핵심 줄거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고, 이 사건 영상의 D 조회수가 128만 회에 이르며, 위 조회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의 이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4-07

3. 결론

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백대현 _____

판사 장성신 _____

판사 정요진 _____